

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10. 4.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10. 1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전영표)

제안이유

- 원미구 약대동 152-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 임
- 본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, 주거환경개선, 폐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-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

주요골자

- 원미구 약대동 152-2번지 주변 67,670m²(20,470평)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임
-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균생시설, 녹지,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폐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
-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

구역면적	건축면적	공공시설면적 (도로, 녹지)	전폐율	용적률	계획세대수	비고
67,670m ²	63,846.2m ²	3,823.8m ²	19.63%	277.43%	1,428	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구 내에서 제척지구를 뺀 이유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이 노후주택을 개량한 지역이며 소유주들이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요구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 제척하였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찬성의견서 채택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8. 첨부서류 : 의견서 1부

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

의안번호	제388호	안건명	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
제출자	부천시장	의결 연월일	제8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(2000. 10. 16)

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및사업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

원미구 약대동 152-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본 지역을 도시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, 주거환경개선, 편리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.

2000년 10월 16일
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약대제2주택재개발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안

의안번호	제388호
의결년월일	2000. 10. 20 (제81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4

제출자 : 부천시장

 제안사유

- 원미구 약대동 152-2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구임
- 본 지역을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, 주거환경개선, 휴식 공간 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-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

 주요골자

- 원미구 약대동 152-2번지 주변 67,670m²(20,470평)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임
-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근생시설, 녹지, 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
-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

구역면적	건축면적	공공시설면적 (도로, 녹지)	전폐율	용적률	계획세대수	비고
67,670m ²	63,846.2m ²	3,823.8m ²	19.63%	277.43%	1,428	

 관련근거

- 도시재개발법 제4조1항 내지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

 참고사항

○ 주민의견청취결과

- 공람기간 : 2000. 8. 30~9. 18(국, 공휴일 제외 14일 간)
- 공람매체 : 중부일보(8. 30일자) 게시, 개별통보

○ 제출의견 : 11건

의견 제출자	의견 요지	검토 의견	비고
약대동 153-11 이경수 외 10명	지구 내에서 제척 요구	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여 제척은 어렵고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음	

중동 33-7번지 김인태 외 11명	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금전청산 요구	지구지정과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관리 처분시 반영하겠음	
도 시 과	이린이공원 조성	사업계획상 경관녹지를 확보하였으며 추후 여건 변동시 검토하겠음	
부천교육청	중학교 1개소 설치	관련법규상 2근린주거구역단위(1근린주 거구역 : 2천세대에서 3천세대)당 1개소 의 비율로 배치토록 되어 있어 해당이 되지 않으며 학교시설부담금을 납부하 겠음	

- 결정권자 : 경기도지사
- 불임 : 사업계획도면 1부

약대2구역 주택재개발 종합계획도

축적 : 1 / 1,500



